

고성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2. 23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주차장법령에서 위임한 주차장이용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자가 제반규정을 위반할 시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구체화 하고 주차장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(안 제4조제3호다목)
- 나.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(안 제17조제1항)
- 다.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부여(안 제17조제2항)
- 라.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및 조치사항(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)

3. 참고사항

0 근거법령

- 주차장법 제24조의2 제2항(과징금 처분)
-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)

0 입법예고 - 2005. 1. 10 ~ 2005. 1. 29 (20일간)

-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
4. 본 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중 “도로교통법”을 “「도로교통법」”으로 하고, 동조제3호가목중 “장애인복지법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”으로, “장애인수첩소지자”를 “장애인등록증소지자”로 하며, 동조제3호나목중 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”을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동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「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승용차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

제17조(과징금 처분) ①군수는 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중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.

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명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불임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제1조중 “주차장법”을 “「주차장법」”으로, “주차장법시행령”을 “「주차장법시행령」”으로, “주차장법시행규칙”을 “「주차장법시행규칙」”으로 하고, 제6조제1항중 “도로교통법”을 “「도로교통법」”으로 하며, 제14조의2 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”을 각각 “「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주차요금의 감면) (생략)</p> <p>1. <u>도로교통법</u>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</p> <p>가. <u>장애인복지법</u>의 관련규정에 의한 <u>장애인수첩소지자</u>의 자가운전차량</p> <p>나. <u>국가유공자에유등에관한법률</u>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</p> <p>다. <u>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</u> 제2조제3호에 의한 <u>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승용차</u></p> <p>4. ~ 5(생략)</p> <p>제17조(과징금 처분) (신설)</p>	<p>제4조(주차요금의 감면) (현행과같음)</p> <p>1. 「<u>도로교통법</u>」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같음)</p> <p>3. ----- -----</p> <p>가.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의 관련규정에 의한 <u>장애인등록증소지자</u>의 자가운전차량</p> <p>나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</p> <p>다. 「<u>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3호에 의한 <u>고엽제후유의증 환자</u> 및 「5·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<u>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승용차</u></p> <p>4. ~ 5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과징금 처분) ①군수는 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<p>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</p> <p>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명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③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한을 붙임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</p> <p>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</p>